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1-①)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직원 근무 경력(8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급직원규정」('75.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li> <li>◦ 「지방잡급직원규정」('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li> </ul>																		
1-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금 등 근무 경력(8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금 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li> </ul>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금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3. 다. 1) 외의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력(5할~8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 임시직, 촉탁, 잡금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5할 이내)</li> <li>◦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후, 임시직, 촉탁, 잡금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li> <li>◦ 국공사립 유초중등학교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직원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li> <li>◦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5할 이내)</li> <li>◦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대학원에서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5할 이내). 다만, 방학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li> <li>- 위의 경력 중 다음의 표와 같이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근무경력은 8할 이내를 인정 한다.</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thead> <tr> <th>직종</th> <th>교원자격증(표시과목)</th> </tr> </thead> <tbody> <tr> <td>영양사</td> <td>영양교사</td> </tr> <tr> <td>전산보조</td> <td>초·중등교사(전산)</td> </tr> <tr> <td>과학실험보조</td> <td>초·중등교사(과학과)</td> </tr> <tr> <td>사서, 사서보조</td> <td>사서교사</td> </tr> <tr> <td>유치원교육보조</td> <td>유치원교사</td> </tr> <tr> <td>전임코치(체육)</td> <td>초·중등교사(체육)</td> </tr> <tr> <td>특수교육보조원</td> <td>특수교사</td> </tr> <tr> <td>상담사</td> <td>전문상담교사</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5px;">※ 단, 이 지침의 시행 전(2011.9. 이전), 개별 지침(IMF 실업구제책 등)에 의해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수업보조, 초등영어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8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경력환산율(8할) 적용을 인정한다.</p>	직종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초·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초·중등교사(과학과)	사서, 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전임코치(체육)	초·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직종	교원자격증(표시과목)																			
영양사	영양교사																			
전산보조	초·중등교사(전산)																			
과학실험보조	초·중등교사(과학과)																			
사서, 사서보조	사서교사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교사																			
전임코치(체육)	초·중등교사(체육)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상담사	전문상담교사																			